



문 화 재 청

수신 내부결재

(경유)

제목 중요무형문화재 지정·인정 및 전승지원 제도개선 토론회 결과 보고

1. 무형문화재과-4387(2012. 11.7)호 관련입니다.

2. 「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정 관련 핵심쟁점사항에 대하여 전승자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최한 ‘무형문화재 지정·인정 및 전승지원에 관한 제도개선 토론회’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.

가. 개 요

- 일 시 : 2012. 11. 15.(목) 14:00~18:30
- 장 소 : 국립고궁박물관 강당(본관)
- 참석자 : 총 200여명(패널 22명, 참관 180여명)

나. 토론내용

- 보유자 중심 전승체계(보유자-전수교육조교-이수자-전수생)의 개선방안
- 보유자 및 보유단체 인정 방식의 개선방안
- 무형문화재 지정 종목 확대 방안
- 무형문화재 지정·인정의 공정성 제고방안
-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개선방안(공예기술 분야)
- 무형문화재 종목 및 전승자 관리 강화방안
- 무형문화재 전승지원의 차등화 방안

다. 향후계획

- 의견수렴 결과 청 의견에 동의하는 안건 중 법령 제·개정 없이 추진할 수 있는 항목은 2013. 1. 1.부터 시행하되, 법령 제·개정이 필요한 항목은 「무형문화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」 시행 이후 시점부터 시행
- 청 의견에 이견을 제시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전승자와 협의 지속

라. 소요예산 : 금4,701,500원 (2131-301-210-01)

붙임 : 중요무형문화재 지정, 인정 및 전승지원 제도 개선 토론회 결과 보고 1부. 끝.

행정사무관 류소명 무형문화재과장 황권순 문화재정책국장 강경환 문화재청차장 김창준
문화재청 2012. 11. 20.
장 김찬

협조자

시행 무형문화재과-4519

접수

우 302-120 대전 서구 둔산동 청사로 189, 정부대전청사 1동 / <http://www.cha.go.kr>
(우:302-701)

전화번호 042-481-4674 팩스번호 042-481-4679 / pespoir9@ocp.go.kr / 대국민 공개

실천하는 청렴강령 사랑받는 문화재청

중요무형문화재 지정인정 및 전승지원 제도가선 토론회 결과 보고

□ 개요

- 일 시 : 2012. 11. 15(목) 14:00~18:30
- 장 소 : 국립고궁박물관 강당
- 참석자 : 200여명(패널 22명, 참관 180여명)
 -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대표 4명, 관계전문가 10명
 - 문화재청장, 문화재정책국장, 무형문화재과장 등 8명
 - 중요무형문화재 전승자 참관 180여명

□ 토론내용

- 보유자 중심 전승체계(보유자-전수교육조교-이수자-전수생)의 개선방안
 - 전수교육조교 선정 필요성 여부
 - 이수자 선발 권한의 문화재청 환원 여부
- 보유자 및 보유단체 인정 방식의 개선방안
 - 보유자 인정 심사 대상범위의 확대 여부
 - 유파, 째 등 전승계보에 따른 보유자 인정 여부
 - 공예기술 종목의 중요무형문화재 지정기준 및 조사방식 개선
 - 보유자 없는 보유단체 및 대동 축제성 놀이 종목의 전승공동체 전환
 - 전승활성화 정도에 따른 탄력적인 보유자 인정
- 무형문화재 지정 종목 확대 방안
- 무형문화재 지정·인정의 공정성 제고방안
-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개선방안(공예기술 분야)
- 무형문화재 종목 및 전승자 관리 강화방안
 - 보유단체의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 전환
 - 보유자의 가·예능 보유 여부 정기조사 및 행정처분 적극 추진
- 무형문화재 전승지원의 차등화 방안
 - 소득수준에 따른 월정 전승지원금 차등 지원 여부
 - 보유단체 단체 지원금 차등지원
 - 전승활동 우수 보유자 및 보유단체 인센티브 부여

□ 토론결과

연번	주요 안전	청 의 건	패널 및 전승자 의견
1	전승체계 개선	- 개인종목은 전수교육조교 선정 지양 - 현행 조교의 보유자 인정 확대 - 이수증 발급권한 회수(보유자→문화재청)	전수교육조교가 서열이 아닌 실질적인 보조 역할로 자리매김 필요
2	보유자 및 보유단체 인정방식 개선	- 보유자 인정 심사 대상 범위 확대 - 전승체계외의 일반전승자 까지 확대 - 유파, 째 등 전승체보를 구분 않고 보유자 인정 - 공예기술 종목을 지정할 경우, 공예품의 기능성 및 활용성을 평가하고, 기술적인 변화도 수용 - 보유자 없는 보유단체 등을 전승공동체 전환 -전승공동체는 중요무형문화재로서 동일 지위 -현행 종목의 경우 기·예능 보유 여부를 검토 하여 전승공동체로 전환 - 전승활성화 및 취약종목 모두 보유자 인정을 적극적으로 추진	- 청의 의견에 동의. 개방형 총원은 동의하나 개인종목과 단체종목 등 종목의 특성에 구분 하여 추진. 현행 전승체계의 합리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일반전승자로의 조사대상 확대에 신중 - 청의 의견에 동의. 유파, 째에 따라 전승되는 현실을 잊어서는 안 됨. - 청의 의견에 동의. 기술적 변화를 어디까지 수용할 것인지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 - 청의 의견에 이견. 대동 축제성 놀이 및 세시 풍속이다 하더라도 기·예능을 특정할 수 있고, 전승주체가 있으므로 보유자 및 전수교육조교 선정의 합리성 있음. 구례전수농악의 경우 보유자 인정 필요성 있음. - 청의 의견에 동의. 취약종목의 경우, 활성화 종목보다 보유자 인정 확대 -종목 내 전문분야별 보유자 복수 인정 필요

연번	주요 안전	청 의 건	패 널 및 전 승 자 의 건
3	지정 종목 확대	공중의례 및 사라질 위기에 처한 공예종목 발굴 및 적극적인 지정	청의 의견에 동의. 적극적인 조사 발굴 및 분야별 전수조사 추진필요
4	지정·인정 공정성 제고	- 조사 시 학술·실기 전문가 균등 참여 - 블라인드 테스트 진행	- 청의 의견에 동의. 학술전문가 실기전문가의 비율을 5:5로 설정 필요 -조사자 전공분야별로 심사분야 세분화 필요
5	공예분야 공개행사 개선	합동 공개행사를 지양하고, 개별 종목별 전체 과정 공개 원칙	청의 의견에 동의. 예능분야의 경우 종목별 공개행사 개최보다는 70~80년대 합동공개 행사 재추진 필요(덕수궁 등 고궁 활용)
6	종목 및 전승자 관리 강화	- 보유단체의 청 소관 비영리법인 전환 - 정기조사 및 행정처분 적극 추진	청의 의견에 동의. 보유단체 회원의 제명 및 탈퇴 등 전승활동 애로 종목에 대한 공정한 실태조사 후 행정처분 요망
7	전승지원 차등화	- 보유단체 지원금 차등 지원 -전승활동 우수 보유자(보유단체) 인센티브 부여 -보유단체의 경우, 이수자 이상의 회원 수에 따라 차등지원 -취약종목 차등지원	청의 의견에 이견. 월전승지원금은 전수교육비 이므로 차등지원을 해야 할 사항은 아님. 보유 단체의 회원 수에 따른 차등지원은 전승자 양성에 한계가 있는 종목의 경우에 형평성이 없으므로 재고 필요

□ 향후 계획

- 청 의견에 동의하는 안건에 대해 법령 제·개정 없이 추진할 수 있는 항목은 전승자에게 공고 후 2013. 1. 1부터 시행하되, 법령 제·개정이 필요한 항목은 '무형문화유산법' 시행 시점부터 실시
 - ('13년부터 실시) 개인종목 전수교육조교 선정 지양, 보유자 인정 심사대상 범위 확대, 유패·째 등 전승계보를 구분 않고 전승자 인정, 공예기술 종목 지정 시 기능성 평가 및 기술적 변화 수용, 보유자 인정 확대, 지정 종목 확대, 실기전문가 참여 등 지정·인정의 공정성 제고, 공예분야 합동 공개행사 지양 및 각 종목별 전체 과정 공개, 정기조사 및 행정처분 적극 추진
 - (무형법 시행 시점부터 실시) 이수증 발급 권한 회수(보유자→청), 보유단체의 청 소관 비영리법인 전환
- 청 의견에 이견을 제시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전승자와 협의 지속
 - 보유자 없는 보유단체 등의 전승공동체 전환, 보유단체 전승지원금 차등화

□ 예산과목 및 소요예산 : 2131-301-210-01 / 4,701.5천원

- 음향 설치비 150만원(150만원×1식)
- 회의수당 240만원(20만원×14명)
- 인쇄비 423.5천원(1,058.75원×400부)
- 현수막 154천원(154천원×1식)
- 다과비 224천원(224천원×1식)

□ 행사 사진

